

「반환보증 채권관리규정」 등 개정 사전예고

1. 규정 명칭

- 「반환보증 채권관리규정」, 「반환보증 채권관리 업무처리기준」 및 「반환보증 채권관리 소정양식」

2. 제·개정 이유

- 회수금 충당방법 명확화, 채권양도계약 생략, 전세대출 상환 범위 및 소 제기 유예 사유 확대 등 업무처리 간소화

3. 주요 제·개정 내용

- 가. 특정 물건과 관련하여 회수한 금액은 당해채권에 우선충당할 수 있도록 충당순서 변경 근거마련
- 나. 전세자금보증 채권양도계약이 유효한 경우 반환보증 이행청구를 위한 채권양도 생략 근거마련
- 다. 법적절차 착수 전 채무조정이 가능하도록 업무처리절차 명확화
- 라. 타 내규 개정사항 반영 등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23년 6월 7일까지 (도착기준) 홈페이지에 의견을 등록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채권관리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
금융센터) 25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채권관리부
- 담당자(이메일) : 이상화 차장(1677@hf.go.kr)
- 전화번호 : 051.663.8119
- 팩스번호 : 0505.036.0763

붙임 반환보증 채권관리규정 개정 전·후대비표 1부
반환보증 채권관리 업무처리기준 개정 전·후대비표 1부
반환보증 채권관리 소정양식 개정 개정 전·후대비표 1부. 끝.

반환보증 채권관리규정 개정 전후대비표

현행	개정안
「반환보증 채권관리규정」 제27조 ① ~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의 충당순서를 변경하여 적용하고자 할 때에는 채무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전결권자의 승인을 얻어 처리한다.	「반환보증 채권관리규정」 제27조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채권보전조치 해제를 위한 지정충당 변제금 또는 우선변제권에 따른 특정 임대차목적물로부터의 회수금은 제1항의 충당순서에도 불구하고 해당 반환보증 구상권에 우선 충당한다.</u> ④ <u>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u> 충당순서를 변경하여 적용하고자 할 때에는 채무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전결권자의 승인을 얻어 처리한다.

반환보증 채권관리 업무처리기준 개정 전후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반환보증 채권관리 업무처리기준」 제2장 보증채무이행 2. 이행청구사유 특례 등 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계약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1) <u>전세자금보증 한도우대를 위한 채권 양도계약이 이미 체결되었더라도, 반환보증의 보증채무이행청구 시에는 새로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해야 한다.</u> 2) <신 설> 8. 대위변제금 지급 마. 대위변제금은 보증채권자의 전세자금 보증 상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 ~ 3) (생 략) 4) 전세자금보증 구상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증채무이행금과 전세자금보증 구상권을 <u>상계 후 잔액을</u> 보증채권자에게 지급한다. 9. 비영업일 명도 시 대위변제금 지급 가. (본문 생략) 이 경우 대위변제일부터 명도예정일까지(초일 불산입) <u>COFIX금리를</u> 적용한 수수료(십원 미만 절사)를 상계후 지급해야하며, 비영업일 직후 영업일에 명도 여부를 <u>확인하여야 한다.</u> 제3장 구상권관리 9. 소송 제기 및 유예 가. ~ 마. (생 략)	「반환보증 채권관리 업무처리기준」 제2장 보증채무이행 2. 이행청구사유 특례 등 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계약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1) <u>전세자금보증 한도우대 등을 위한 채권 양도계약이 이미 체결되어 있는 경우 이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채권 양도계약이 해지·해제되었거나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새로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해야 한다.</u> 2) <u>새로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채권양도계약서에는 공증인 또는 법원 사무관의 날인, 내용증명우편 등의 방법에 따라 확정일자를 부여 받아야 한다.</u> 8. 대위변제금 지급 마. 대위변제금은 보증채권자의 전세자금 보증 상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 ~ 3) (현행과 같음) 4) 전세자금보증 구상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증채무이행금과 전세자금보증 구상권을 <u>상계하고, 전세자금 보증부대출 잔여채무를 대출은행에 상환요청서 징구 후 지급한 후 남은 금액을</u> 보증채권자에게 지급한다. 9. 비영업일 명도 시 대위변제금 지급 가. (본문 생략) 이 경우 대위변제일부터 명도예정일까지(초일 불산입) <u>은행연합회가 가장 최근 공시한 COFIX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잔액기준, 신 잔액기준 중 가장 낮은 금리)</u>를 적용한 수수료(십원 미만 절사)를 상계후 지급해야하며, 비영업일 직후 영업일에 명도 여부를 <u>확인해야 한다.</u> 제3장 구상권관리 9. 소송 제기 및 유예 가. ~ 마.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u>바. <신설></u> <u>사. <신설></u> 11. 강제집행 유예 가. (생략) <u><신설></u> <u>나. 위 “가” 이외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강제집행에 착수한다.</u> 14. 자체 채무조정 <u>주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한 경우 “채무조정요청서(반환보증용)” <공사 소정양식> 작성 후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확인할 것을 안내하여야 한다.</u> <u><신설></u>	<u>바. 위 “가” 에도 불구하고 주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소 제기를 유예할 수 있다.</u> <u>사. 위 “바” 의 채무조정 약정이 체결되지 않거나 실효된 경우에는 즉시 소송을 제기한다.</u> 11. 강제집행 유예 가. (생략) <u>나. 위 “가” 에도 불구하고 주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소 제기를 유예할 수 있다.</u> <u>다. 위 “가” 또는 “나” 이외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강제집행에 착수한다.</u> 14. 자체 채무조정 <u>가. 주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한 경우 “채무조정요청서(반환보증용)” <공사 소정양식> 작성 후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확인할 것을 안내해야 한다.</u> <u>나. 강제집행 종료 전 채무조정은 상환기간을 3년 이내로 하여 1회에 한하여 허용하며, 분할상환금 상환 유예는 허용하지 않는다.</u> <u>부칙(1)</u> <u>1. 시행일</u> <u>이 기준은 2023년 0월 00일부터 시행한다.</u> <u>2. 경과조치</u> <u>2022년 9월 29일 이전 전세지킴보증약관에 의해 취급된 전세지킴보증에 대해서는 제2장 보증채무이행 8. 대위변제금 지급에 관해서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u>

반환보증 채권관리 소정양식 개정 전후대비표

현행				개정안			
목차				목차			
종류	서식 연번	서식종류	page	종류	서식 연번	서식종류	<삭제>
보증채무이행	1	보증채무이행 청구서	1	보증채무이행	1	보증채무이행 청구서	<삭제>
	2	임대차목적물 명도확인서	2		2	임대차목적물 명도확인서	<삭제>
	3	임대차목적물 퇴거(예정)확약서	3		3	임대차목적물 퇴거(예정)확약서	<삭제>
	4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권리침해 유무확인서	4		4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권리침해 유무확인서	<삭제>
	5	전세지킴보증 이행 예정 사실 통지서	5		5	전세지킴보증 이행 예정 사실 통지서	<삭제>
	6	보증채무이행품의서	6		6	보증채무이행품의서	<삭제>
	7	보증채무이행품의(승인신청)서	7		7	보증채무이행품의(승인신청)서	<삭제>
	8	보증채무이행심사 약식 점검표	8		8	보증채무이행심사 약식 점검표	<삭제>
	9	보증채무이행심사 점검표	9		9	보증채무이행심사 점검표	<삭제>
	10	보증채무이행 승인통지서(일반용)	13		10	보증채무이행 승인통지서(일반용)	<삭제>
	11	보증채무이행 승인통지서(전세대출 상환용)	14		11	보증채무이행 승인통지서(전세대출 상환용)	<삭제>
	12	보증채무이행 유보/거절통지서	15		12	보증채무이행 유보/거절통지서	<삭제>
	13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 위임장	16		13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 위임장	<삭제>
	14	임차권말소등기 신청 위임장	17		14	임차권말소등기 신청 위임장	<삭제>
		<신설>			15	전세권말소등기 신청 위임장	
	15	배당금 수령 위임장	18		16	배당금 수령 위임장	<삭제>
	16	배당금교부신청서	19		17	배당금교부신청서	<삭제>
	17	상환요청서	20		18	상환요청서	<삭제>
구상권관리	18	대위변제증서	21		19	대위변제증서	<삭제>
	19	채무정리요청 및 채무조정제도 안내문	22	구상권관리	20	채무정리요청 및 채무조정제도 안내문	<삭제>
	20	명도(퇴거)소송 제기 예정 통지서	24		21	명도(퇴거)소송 제기 예정 통지서	<삭제>
	21	소제기 유예 품의서(반환보증 명도소송용)	25		22	소제기 유예 품의서(반환보증 명도소송용)	<삭제>
	22	제3자 대위변제 신청서(이해관계 있는 제3자용)	26		23	제3자 대위변제 신청서(이해관계 있는 제3자용)	<삭제>
	23	제3자 대위변제 신청서(이해관계 없는 제3자용)	27		24	제3자 대위변제 신청서(이해관계 없는 제3자용)	<삭제>
		<신설>			25	소제기 유예 신청서	
	24	소제기 유예 품의서(반환보증용)	28		26	소제기 유예 품의서(반환보증용)	<삭제>
	25	강제집행(경매) 예정 통지서	29		27	강제집행(경매) 예정 통지서	<삭제>
		<신설>			28	강제집행 유예 신청서	
	26	강제집행 유예 품의서(반환보증용)	30		29	강제집행 유예 품의서(반환보증용)	<삭제>
	27	채무조정요청서	31		30	채무조정요청서	<삭제>
	28	해지증서	32		31	해지증서	<삭제>
<서식10> 보증채무이행 승인통지서 (일반용) 보증채권자귀하 ○○○○지사장 (인) 년 월 일자 귀하의 보증채무 이행 청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다 음 - 1. ~ 2. (생략) 3. 기타 1) 아래 서류를 작성하시어 인감증명서 5부, 주택임차권 등기결정문과 함께 공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대위변제증서				<서식10> 보증채무이행 승인통지서 (일반용) 보증채권자귀하 ○○○○지사장 (인) 년 월 일자 귀하의 보증채무 이행 청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다 음 - 1. ~ 2. (현행과 같음) 3. 기타 1) 아래 서류를 작성하시어 인감증명서 5부, 주택임차권 등기결정문과 함께 공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대위변제증서			

현행	개정안
-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 위임장 <신 설> - 임차권말소등기 신청 위임장 및 등기필증 원본 <신 설> - <신 설> - 배당금교부신청서 - 배당금 수령 위임장 3부 2) ~ 3) (생 략)	-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 위임장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경우) - 임차권말소등기 신청 위임장 및 등기필증 원본 (민법에 의한 경우) - 전세권말소등기 신청 위임장 및 등기필증 원본 (민법에 의한 경우) - 배당금교부신청서 - 배당금 수령 위임장 3부 2) ~ 3) (현행과 같음)
<서식11> 보증채무 이행 승인 통지서 (전세대출 상환용) 보증채권자 귀하 ○○○○지사장 (인) 년 월 일자 귀하의 보증채무 이행 청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다 음 - 1. ~ 2. (생 략) 3. 기 타 1) 아래 서류를 작성하시어 인감증명서 5부, 주택임차 권등기결정문과 함께 공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대위변제증서 -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 위임장 <신 설> - 임차권말소등기 신청 위임장 및 등기필증 원본 <신 설> - <신 설> - 배당금교부신청서 - 배당금 수령 위임장 3부 - 상환요청서 2) ~ 3) (생 략)	<서식11> 보증채무 이행 승인 통지서 (전세대출 상환용) 보증채권자 귀하 ○○○○지사장 (인) 년 월 일자 귀하의 보증채무 이행 청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다 음 - 1. ~ 2. (현행과 같음) 3. 기 타 1) 아래 서류를 작성하시어 인감증명서 5부, 주택임차 권등기결정문과 함께 공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대위변제증서 -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 위임장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경우) - 임차권말소등기 신청 위임장 및 등기필증 원본 (민법에 의한 경우) - 전세권말소등기 신청 위임장 및 등기필증 원본 (민법에 의한 경우) - 배당금교부신청서 - 배당금 수령 위임장 3부 - 상환요청서 2) ~ 3) (현행과 같음)
<서식15> <신 설>	<서식15> 전세권말소등기 신청 위임장 수 입 인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 소 : 법인번호 :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여 다음 사항을 위임함 - 다 음 - 1. 전세권말소등기 신청 - 부동산의 표시 : - 말소할 등기 : 서기 년 월 일 접수번호 제 호로 설정한 전세권 2. 복대리인 선임을 포함한 위 “1” 에 필요한 행위 일체 년 월 일

현행	개정안																																				
	위임인 성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서식17> 상환요청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사장 귀하 귀 공사의 전세지킴보증채무이행에 따른 보증채무이행금의 수령에 있어 본인이 이용 중인 전세자금대출의 상환을 아래와 같이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생략) 2. 상환계좌 은행명 : 은행 예금주 : 계좌번호 : 확인자 : 은행 지점/센터장 (인) 추가서류 : 확인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년 월 일 보증채권자 : (인) 주민번호 :	<서식18> 상환요청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사장 귀하 귀 공사의 전세지킴보증채무이행에 따른 보증채무이행금의 수령에 있어 본인이 이용 중인 전세자금대출의 상환을 아래와 같이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현행과 같음) 2. 상환계좌 은행명 : 은행 예금주 : 계좌번호 : 확인자 : 은행 지점/센터장 (인) <삭제> 년 월 일 보증채권자 : (인) 주민번호 :																																				
<서식 19> (생략) 별지 재무조정제도 안내 <table><tr><th></th><th>한국주택금융공사 [자체조정]</th><th>신용회복위원회</th><th>개인회생</th></tr><tr><td>운영주체</td><td>한국주택금융공사</td><td>신용회복위원회</td><td>법원</td></tr><tr><td>대상채무</td><td>공사채무 (주택금융신용보증 관련)</td><td>총채무액 15억원이하로서 담보부채무10억원이하 무담보채무 5억원이하 (사채제외)</td><td>개인채무에 한하여 담보부 10억원이하 무담보 5억원이하 (사채포함)</td></tr><tr><td>채무상환기간</td><td>최장 10년 (연장가능)</td><td>2억원이하 : 최장 8년 2억초과 : 최장 10년</td><td>원칙 3년 (최장 5년)</td></tr><tr><td>신용도 (불량) 판단 정보 해제</td><td>즉시해제</td><td>채무조정 확정이후 연체없이 2년이상 변제시</td><td>변제완료 후 면책결정시</td></tr><tr><td>채무감면</td><td>채무조정지수에 따라 상각채권 감면 가능</td><td>신청인의 상환여력을 감안하여 상각채권은 최대 70% 미상각채권은 최대 30%</td><td>법원 결정에 따라 원금감면</td></tr><tr><td>기관 별 채무 조정 추천 대상</td><td>분할상환약정을 통해 공사채무 관련 신용도(불량)판단 정보를 해제하기 원하는 분</td><td>공사채무외 타채무가 과다하여 전체채무에 대해 채무조정을 받기를 희망하는 분</td><td>가용소득·범위내 에서 채무변제를 희망하는 분 (확정채무의 잔여채무는 면책)</td></tr><tr><td>신청비용</td><td>비용 없음</td><td>신청비 5만원</td><td>변호사 등 이용 시 비용발생</td></tr><tr><td>문의</td><td>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td><td>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td><td>관할 회생(지방)법원</td></tr></table>		한국주택금융공사 [자체조정]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	운영주체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대상채무	공사채무 (주택금융신용보증 관련)	총채무액 15억원이하로서 담보부채무10억원이하 무담보채무 5억원이하 (사채제외)	개인채무에 한하여 담보부 10억원이하 무담보 5억원이하 (사채포함)	채무상환기간	최장 10년 (연장가능)	2억원이하 : 최장 8년 2억초과 : 최장 10년	원칙 3년 (최장 5년)	신용도 (불량) 판단 정보 해제	즉시해제	채무조정 확정이후 연체없이 2년이상 변제시	변제완료 후 면책결정시	채무감면	채무조정지수에 따라 상각채권 감면 가능	신청인의 상환여력을 감안하여 상각채권은 최대 70% 미상각채권은 최대 30%	법원 결정에 따라 원금감면	기관 별 채무 조정 추천 대상	분할상환약정을 통해 공사채무 관련 신용도(불량)판단 정보를 해제하기 원하는 분	공사채무외 타채무가 과다하여 전체채무에 대해 채무조정을 받기를 희망하는 분	가용소득·범위내 에서 채무변제를 희망하는 분 (확정채무의 잔여채무는 면책)	신청비용	비용 없음	신청비 5만원	변호사 등 이용 시 비용발생	문의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관할 회생(지방)법원	<서식 20> (현행과 같음) <삭제>
	한국주택금융공사 [자체조정]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																																		
운영주체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대상채무	공사채무 (주택금융신용보증 관련)	총채무액 15억원이하로서 담보부채무10억원이하 무담보채무 5억원이하 (사채제외)	개인채무에 한하여 담보부 10억원이하 무담보 5억원이하 (사채포함)																																		
채무상환기간	최장 10년 (연장가능)	2억원이하 : 최장 8년 2억초과 : 최장 10년	원칙 3년 (최장 5년)																																		
신용도 (불량) 판단 정보 해제	즉시해제	채무조정 확정이후 연체없이 2년이상 변제시	변제완료 후 면책결정시																																		
채무감면	채무조정지수에 따라 상각채권 감면 가능	신청인의 상환여력을 감안하여 상각채권은 최대 70% 미상각채권은 최대 30%	법원 결정에 따라 원금감면																																		
기관 별 채무 조정 추천 대상	분할상환약정을 통해 공사채무 관련 신용도(불량)판단 정보를 해제하기 원하는 분	공사채무외 타채무가 과다하여 전체채무에 대해 채무조정을 받기를 희망하는 분	가용소득·범위내 에서 채무변제를 희망하는 분 (확정채무의 잔여채무는 면책)																																		
신청비용	비용 없음	신청비 5만원	변호사 등 이용 시 비용발생																																		
문의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관할 회생(지방)법원																																		

현행			개정안																														
<table><tr><td>팀원</td><td>팀장</td><td>지사장</td></tr><tr><td></td><td></td><td></td></tr><tr><td></td><td></td><td></td></tr></table>			팀원	팀장	지사장							<table><tr><td>팀원</td><td>팀장</td><td>지사장</td></tr><tr><td></td><td></td><td></td></tr><tr><td></td><td></td><td></td></tr></table>			팀원	팀장	지사장																
팀원	팀장	지사장																															
팀원	팀장	지사장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u>예상구상실익</u>			<u><삭제></u>																														
<table><tr><td>목적물 시세</td><td>원</td><td colspan="2">☐ 감정평가액 ☐ 경매 유찰가액 등</td></tr><tr><td></td><td></td><td colspan="2">☐ 공시가격 ☐ 최근 매매가격</td></tr><tr><td></td><td></td><td colspan="2">☐ 공신력 있는 기관의 인터넷 시가정보</td></tr><tr><td>선순위 차감액</td><td>원</td><td>☐ 조세</td><td>☐ 근저당권 등</td></tr><tr><td></td><td></td><td>☐ 임금채권</td><td>☐ 임차보증금</td></tr><tr><td></td><td></td><td>☐ 기상환액</td><td>원</td></tr><tr><td>예상구 상실익</td><td>원</td><td colspan="2">목적물 시세 - 선순위 차감액</td></tr></table>			목적물 시세	원	☐ 감정평가액 ☐ 경매 유찰가액 등				☐ 공시가격 ☐ 최근 매매가격				☐ 공신력 있는 기관의 인터넷 시가정보		선순위 차감액	원	☐ 조세	☐ 근저당권 등			☐ 임금채권	☐ 임차보증금			☐ 기상환액	원	예상구 상실익	원	목적물 시세 - 선순위 차감액				
목적물 시세	원	☐ 감정평가액 ☐ 경매 유찰가액 등																															
		☐ 공시가격 ☐ 최근 매매가격																															
		☐ 공신력 있는 기관의 인터넷 시가정보																															
선순위 차감액	원	☐ 조세	☐ 근저당권 등																														
		☐ 임금채권	☐ 임차보증금																														
		☐ 기상환액	원																														
예상구 상실익	원	목적물 시세 - 선순위 차감액																															
3. <u>유예 요건</u>			2. 유예 요건 (아래 ① 또는 ②에 해당할 것)																														
<table><tr><td>계약 체결</td><td>☐여 ☐부</td><td>계약 금액</td><td>원</td><td>잔금일</td><td></td></tr><tr><td>매물 등록</td><td>☐여 ☐부</td><td>등록 금액</td><td>원</td><td>등록일</td><td></td></tr><tr><td>요건 충족</td><td>☐여 ☐부</td><td colspan="2">계약/등록금액 ≥ 예상구상실익</td><td>유예 기한</td><td></td></tr></table>			계약 체결	☐ 여 ☐ 부	계약 금액	원	잔금일		매물 등록	☐ 여 ☐ 부	등록 금액	원	등록일		요건 충족	☐ 여 ☐ 부	계약/등록금액 ≥ 예상구상실익		유예 기한		① 매매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에 의한 경우												
계약 체결	☐ 여 ☐ 부	계약 금액	원	잔금일																													
매물 등록	☐ 여 ☐ 부	등록 금액	원	등록일																													
요건 충족	☐ 여 ☐ 부	계약/등록금액 ≥ 예상구상실익		유예 기한																													
			<table><tr><td>계약 체결</td><td>☐여 ☐부</td><td>계약 금액</td><td>원</td><td>잔금일</td><td></td></tr><tr><td>매물 등록</td><td>☐여 ☐부</td><td>등록 금액</td><td>원</td><td>등록일</td><td></td></tr><tr><td>요건 충족</td><td>☐여 ☐부</td><td colspan="2">시세(또는 시세 유사 가격) ≥ 대위변제금</td><td>유예 기한</td><td></td></tr></table>			계약 체결	☐ 여 ☐ 부	계약 금액	원	잔금일		매물 등록	☐ 여 ☐ 부	등록 금액	원	등록일		요건 충족	☐ 여 ☐ 부	시세(또는 시세 유사 가격) ≥ 대위변제금		유예 기한											
계약 체결	☐ 여 ☐ 부	계약 금액	원	잔금일																													
매물 등록	☐ 여 ☐ 부	등록 금액	원	등록일																													
요건 충족	☐ 여 ☐ 부	시세(또는 시세 유사 가격) ≥ 대위변제금		유예 기한																													
			② 채무조정약정 체결에 의한 경우																														
			<table><tr><td>약정 체결</td><td>☐여 ☐부</td><td>약정 금액</td><td colspan="3">원</td></tr></table>			약정 체결	☐ 여 ☐ 부	약정 금액	원																								
약정 체결	☐ 여 ☐ 부	약정 금액	원																														
4. <u>검토의견</u>			3. 검토의견																														
<u><서식 28> <신설></u>			<u><서식28></u>																														
			<u>강제집행 유예 요청서</u>																														
			1. 대상 구상권																														
			<table><tr><td>보증번호</td><td></td><td>보증기간</td><td></td></tr><tr><td>보증목적물</td><td colspan="3"></td></tr><tr><td>보증채무이행일</td><td></td><td>보증채무이행금</td><td></td></tr></table>			보증번호		보증기간		보증목적물				보증채무이행일		보증채무이행금																	
보증번호		보증기간																															
보증목적물																																	
보증채무이행일		보증채무이행금																															
			2. 유예 해당요건																														
			- 대위변제금과 대지급금의 합계가 임대차목적물 시세보다 적고 매매계약서(또는 임대차 계약서) 및 계약금 수령 내역을 제출																														
			<table><tr><td colspan="4">대위변제금이 임대차목적물 시세보다 적음 (여 / 부)</td></tr><tr><td>대위변제금</td><td>원</td><td>임대차목적물 시세</td><td>원</td></tr><tr><td>대지급금</td><td>원</td><td>(보증채무이행 시점)</td><td></td></tr></table>			대위변제금이 임대차목적물 시세보다 적음 (여 / 부)				대위변제금	원	임대차목적물 시세	원	대지급금	원	(보증채무이행 시점)																	
대위변제금이 임대차목적물 시세보다 적음 (여 / 부)																																	
대위변제금	원	임대차목적물 시세	원																														
대지급금	원	(보증채무이행 시점)																															
			- 매매계약서(또는 임대차계약서), 계약금 수령내역 제출 여부 (여 / 부)																														
			3. 확인사항																														

현행	개정안																											
	1) 본인은 상기 전세지킴보증에 대하여 공사가 임차인 이자 보증채권자인 000에게 채권양도를 받아 진행 된 보증채무이행에 따른 주채무를 상환할 의무를 부 담합니다. 2) 본인은 상기 채무에 대하여 공사로 상환해야함을 확 인하였으며, 소제기 유예 해당요건 충족에 따라 년 월 일까지 강제집행의 유예를 요청합니다. 3) 이 확인서의 내용이 사실과 달라 귀 공사에 손해가 발 생하는 경우 강제집행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권리침해 내용(공사에 기 제출한 경우 생략 가능) <table><tr><td>권리침해 유무</td><td>☐ 있음 ☐ 없음</td></tr><tr><td>권리침해가 있을 경우 관련 내용</td><td>☐채권양도통지 ☐압류 ☐가압류 ☐전부명령 ☐추심명령 ☐질권설정 ☐기타(월차임연체 등) ()</td></tr></table> 상기 사실을 확인하고 강제집행 유예를 요청한 년 월 일 요청인 성명 (인) 주소	권리침해 유무	☐ 있음 ☐ 없음	권리침해가 있을 경우 관련 내용	☐ 채권양도통지 ☐ 압류 ☐ 가압류 ☐ 전부명령 ☐ 추심명령 ☐ 질권설정 ☐ 기타(월차임연체 등) ()																							
권리침해 유무	☐ 있음 ☐ 없음																											
권리침해가 있을 경우 관련 내용	☐ 채권양도통지 ☐ 압류 ☐ 가압류 ☐ 전부명령 ☐ 추심명령 ☐ 질권설정 ☐ 기타(월차임연체 등) ()																											
<서식26> 강제집행 유예 품의서 (반환보증용) <table><tr><td>팀원</td><td>팀장</td><td>지사장</td></tr><tr><td></td><td></td><td></td></tr><tr><td></td><td></td><td></td></tr></table> 1. (생략) 2. 예상구상실익 <table><tr><td>목적물 시세</td><td>원</td><td>☐ 감정평가액 ☐ 경매 유찰가액 등 ☐ 공시가격 ☐ 최근 매매가격 ☐ 공신력 있는 기관의 인터넷 시가정보</td></tr><tr><td>선순위 차감액</td><td>원</td><td>☐ 조세 원 ☐ 근저당권등 ☐ 임금채권 원 ☐ 임차보증금 ☐ 기상환액 원</td></tr><tr><td>예상구 상실익</td><td>원</td><td>목적물 시세 - 선순위 차감액</td></tr></table> 3. 유예 요건	팀원	팀장	지사장							목적물 시세	원	☐ 감정평가액 ☐ 경매 유찰가액 등 ☐ 공시가격 ☐ 최근 매매가격 ☐ 공신력 있는 기관의 인터넷 시가정보	선순위 차감액	원	☐ 조세 원 ☐ 근저당권등 ☐ 임금채권 원 ☐ 임차보증금 ☐ 기상환액 원	예상구 상실익	원	목적물 시세 - 선순위 차감액	<서식26> 강제집행 유예 품의서 (반환보증용) <table><tr><td>팀원</td><td>팀장</td><td>지사장</td></tr><tr><td></td><td></td><td></td></tr><tr><td></td><td></td><td></td></tr></table> 1. (현행과 같음) <삭제> 2. 유예 요건 (아래 ① 또는 ②에 해당할 것) ① 매매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에 의한 경우	팀원	팀장	지사장						
팀원	팀장	지사장																										
목적물 시세	원	☐ 감정평가액 ☐ 경매 유찰가액 등 ☐ 공시가격 ☐ 최근 매매가격 ☐ 공신력 있는 기관의 인터넷 시가정보																										
선순위 차감액	원	☐ 조세 원 ☐ 근저당권등 ☐ 임금채권 원 ☐ 임차보증금 ☐ 기상환액 원																										
예상구 상실익	원	목적물 시세 - 선순위 차감액																										
팀원	팀장	지사장																										

현행						개정안					
계약 체결	☐ 여 ☐ 부	계약금액	원	잔금일		계약 체결	☐ 여 ☐ 부	계약금액	원	잔금일	
매물 등록	☐ 여 ☐ 부	등록금액	원	등록일		매물 등록	☐ 여 ☐ 부	등록금액	원	등록일	
요건 충족	☐ 여 ☐ 부	계약/등록금액 ≥ 예상구상실익			유예기한	요건 충족	☐ 여 ☐ 부	시세(또는 시세 유사 가격) ≥ 대위변제금			유예기한
4. 검토의견						② 채무조정약정 체결에 의한 경우					
						약정 체결	☐ 여 ☐ 부	약정금액	원		
4. 검토의견						3. 검토의견					